

2018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 1

1.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3

- 1-1.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1-2.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1-3.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 1-4.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출장·파견은 갈 수 있나요? 11

- 2-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3.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17

- 3-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3-2.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3-3.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25

- 4-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4-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31

- 5-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5-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6.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35

- 6-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6-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6-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7.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43

- 7-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7-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7-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8.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9

- 8-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 8-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9.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되나요? 53

- 9-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9-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 9-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10. 복무만으로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59

- 10-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 10-2.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

-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현역병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편입 후 병역지정 업체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자연계 학사 학위자도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하여 편입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동일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연구소)에서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 시간 중에 개인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업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 기간 중에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01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 1-1.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1-2.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1-3.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 1-4.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1 |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할 수 있는 일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 연구활동은 제외)
- 대학부설연구기관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21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1-2 |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함께 할 수 없는 업무

-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 등 임원
-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등 다른 업무

●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 포함)

●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에는 개인 영리활동 금지



임원업무를 한 위반사례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소속법인의 이사로 임명되어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의 권한인 결재 등의 업무 수행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영리활동한 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이 업체의 목인 하에 조기 퇴근하여 입시학원에서 8개월 동안 강사로 개인 영리활동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1-3 |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거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연장 복무 경고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연장 복무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 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연장 복무 경고 시정
3. 점직금지 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 수확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시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경고

*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가 아닌 본인 스스로 편입당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편입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1-4 |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고대상 : 편입당시 해당분야(업체) 미종사
-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
으로 신고
 -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모든 매체 사용 가능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 들어가기

병무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복무위반행위신고 → 신고하기



- 책임실태조사관 신고조사
 - 보안유지 조사 →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조사 결과처리
 - 실태조사 결과 업체가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 등 처분이 면해지며 본인이 원하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함
 - ※ 전직은 위반행위를 한 본인이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전직을 원하는 경우 업체가 주의 등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함
 - ※ 폭언·폭행·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병역지정업체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02

출장 · 파견은 갈 수 있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 · 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입니다.
- 출장 · 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 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 · 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처분 될 수 있으니 업체에서 출장 · 파견을 지시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출장 · 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3.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국내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6월
- 국내 파견근무(출장 포함)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2년
-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과 파견근무 : 승인
 - 병역지정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
 - 3월 미만 국내 교육훈련과 병역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 신상변동 통보
 - 병역지정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후 파견
 - 7일 이내 국내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에만 기재
 - 병역지정업체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통보와 같음)

☞ 출장 및 파견의 의미

- “국내 출장근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 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국내 파견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 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

2-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출장승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 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등에 수급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

2-3 |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 및 부소재지의 연구소로의 파견
 -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
- 파견제한 사유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 업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업무처리 사례

사례1)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출장(월~수), 사내근무(목), 출장(금~목) 형태로 2주간에 걸쳐 전체 10일간 출장을 간 경우
▶ 복무기록표 기재(연속하지 않은 출장인, 3일 출장과 7일 출장을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

사례2)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신상변동통보(토·일요일 포함하여 8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무단결근을 제외한 모든 기간계산은 공휴일,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8일간 결근을 한 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일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하는데 그 연장기간에도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음)

사례3)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월~금 출장 후,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새내로 출근했다가 다시 오후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 신상변동통보(둘째 주 월요일도 출장에 해당함, 따라서 12일간 출장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03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당연전직)나 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당연전직·승인전직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1년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14일)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 3-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3-2.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3-3.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1 |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당연전직)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승인전직)

- ① 하나의 병역지정업체에서 1년6월 이상 복무한 경우
- ② 연구분야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통틀어 3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 된 경우
- ④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서 중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예) 대기업 → 중소기업, 국공립 등 → 중소기업)
- ⑤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⑥ 병역지정업체장의 부당한 복무지시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당해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신고자에 한함)
- ⑦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합니다.
 -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⑧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 ⑨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업무상의 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 ⑩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를 옮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전직 승인신청서 제출

-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를 제출. 다만, 하나의 병역지정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복무,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수료이후),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직할 병역지정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승인전직 사유 ⑥부터 ⑩까지는 전직 사유 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단, ⑧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기간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준비할 서류

전직 신청서, 채용동의서(1개월 이내 발행) 등 증빙 자료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승인전직 사유 ⑥부터 ⑩까지는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전직승인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 희망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상호 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



유의사항

- 전직 승인 시에 업체장의 동의여부가 전직승인의 전제조건은 아님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전문연구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 받아 처리하고,
 - 병역지정업체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시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전직승인을 얻은 사람이 원래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기 전에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상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2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

-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승인일로부터 3월(1년 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 1년 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제외)
- 최초 3개월(또는 14일)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
- 전직대기기간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 취소

3-3 |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 남은 사람(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함에 따라 핵심 연구 과제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로서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이외의 연구기관으로 전직



- 전문연구요원의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04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4-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4-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1 |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 결근

- 1일 기준 근로시간 : 8시간 적용
- 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무단결근의 연장복무 사례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5일 동안 결근

- ▶ 병역법 위반 : 5일 연장복무

● 지각, 조퇴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병역지정업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

- 지각·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



규정된 연가일수 초과한 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 조퇴, 하루는 사적인 4시간 외출

- ▶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연장복무

● 병가

- 통틀어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사례

전문연구요원이 편입하여 1년 동안 30일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 1년간 30일의 병가를 내고, 그 다음 1년 동안 3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단, 업무상 발생한 질병과 관련이 없는 병가)

- ▶ 60일 연장복무(통틀어 30일을 초과한 기간)



4-2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변경이란?

- 전문연구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병역판정 검사 가능함
-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지정병원 조회

●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무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 신체등급 5급 :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 신체등급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



참고사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질병으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여 4급을 받은 경우의 신분은?

- ▶ 전문연구요원 : 신분에 변동 없이 36개월 의무복무



05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또는 방충통신에 의한 수학이나 박사과정 수학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될 수 있습니다.



5-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5-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5-1 |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수학금지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 불가

● 수학금지 위반처벌

- 위반내용 :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신상변동통보 없이 수학
- 위반 시 : 편입취소 또는 연장복무



5-2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수학금지 예외

-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 가능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수학승인(의무복무기간 미포함)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3년6월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
 - 수학의 신상변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상이동통보 절차 : 의무자 → 업체의 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
-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 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 이며 3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6-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6-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6-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6-1 |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 휴가기간 내 개인여행 등

● 허가신청 및 기간

-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
-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1년
- 의무복무 인정기간 : 모두 합하여 3개월

* '15.7.1.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15.6.30. 이전 편입자는 종전규정 적용)



6-2 |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정범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 공동연구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연구기관
 - 계약형태 : 공동연구 계약/협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공동연구 계약서/협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사본 1부
 - 기술연수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기관
 - 계약형태 : 기술도입 계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도입계약서(기술연수시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기술지도
 - 계약당사자 : 국외 제품·기술수입기업, OEM 외국 기업
 -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제품수출계약서(기술지도시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인정요건

-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 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개인부담은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개인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계약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연구요원과 해외교수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기간 불인정)



6-3 |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행정처분 대상(허가위반 사항)

-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



허가기간에 관한 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이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3개월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기간보다 7일 늦게 입국

-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 병역사항 : 35세(의무사관후보생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
- 해당분야 : 연구 · 연수 · 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전공)분야와 관련성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 *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물 소유권 :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 *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공동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유효기간 확인
- 협약 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
 - *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 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공동연구 계약서(건본)

① 연구과제	○○○○○○○
② 연구내용	1.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와 한국○○○은 ○○라는 목적을 위하여 양 연구기관이 공동연수를 수행하고자 한다 공동연구는 2. 연구프로젝트 기간 연구프로젝트는 ○○년○월○일부터 ○○년○월○일 까지 진행한다. 3.
③ 경비부담	미국○○○와 한국○○○ 연구기관은 연구프로젝트와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은 ○○을 부담하고 한국○○○은 ○○을 부담한다
④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미국○○○와 한국○○○ 연구기관은 이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
⑤ ○○○연구기관장	(서명), ○○○ 연구기관장 (서명)

※ 계약서 형식은 연구기관별로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복무인정 심사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① ~ ⑤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복무인정 심사가 가능합니다.



07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사교육소집은 병역지정업체의 생산·제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기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7-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7-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7-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7-1 |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 편입한 후 6개월 이내에
 -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화면)
-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경우
 - 전직대기 중인 경우(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가능)
 - 국외근무중인 경우,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

-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급 4급으로서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군사훈련을 20일 이상 받은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7-2 |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 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조회 및 발급 → “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화면

●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회사 주요업무 수행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7-3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 군사교육소집기간 : 4주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으로 처분을 보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으로 처분)

● 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퇴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참고사항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수 있으며 퇴영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만료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기간 중 입계 된 부상·질병·또는 장해(군인사법에 의한 공상으로 인종된 경우)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08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
포함하며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연장복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8-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8-1 |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 의무복무기간 계산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산입

8-2 |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

-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 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모두 합하여 3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 기간

-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복무토록 결정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되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 9-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9-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 9-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9-1 |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전직대기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에서 편입된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편입취소에 해당되는 사례

전문연구요원이 31세 편입한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없게 됨

▶ 편입취소

9-2 |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 의무부과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복무단축

- 단축대상 : 편입 취소된 사람
- 단축기간
 -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기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산정한 기간

● 복무단축 예외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



의무부와 후 복무기간 단축 사례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A씨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270일 근무 후 해고되어 편입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복무기간 단축 : 89일
【 군사교육소집기간(29일) + (의무복무기간(241일) ÷ 4일) 】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B씨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서 90일 근무 후 해고되어 편입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복무기간 단축 : 22일
【 의무복무기간(90일) ÷ 4일 】

9-3 |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유보대상(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
- **유보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 제기 서류

● 유보결과 처리

- 적법,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편입취소 후 병역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복직 또는 전직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편입취소



유의사항

- **화해의 경우**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업체장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취하의 경우**
 - 취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원칙
단, 업체와 의무자가 합의하여 복직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10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 「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므로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예비군 관련방침 상 동원예비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예비군이 되어 향방훈련을 받게 됩니다.



10-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10-2.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



10-1 | 예비군훈련시간은 이렇습니다.

● 훈련대상 및 시간

구분		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항방 기본 훈련	항방 직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4시간		12시간 (6H×2)		124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5~6 년차	동원지정자			8시간	6시간	4시간	142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7~8년차							160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7~8년차							160

10-2 |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이 보류됩니다.

● 보류대상 : 법규보류 · 후순위 대상자

－ 법규보류 대상자 : 국방부장관이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 교육 훈련을 보류. (「항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 주요 법규보류 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

－ 후순위대상자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병력 동원소집 대상자 중 후순위 승인요청에 의하여 병력동원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사람을 말할.

* 후순위조정 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해운업종의 경우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의 필수요원 등





| 전문연구요원 제도 상담 전화번호 |

청 별	주 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FAX
병 무 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35208	042)481-2813 2818	042)481-2819
서 울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07360	02)820-4492~4 4496	02)820-4151
부 산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051)667-5238 5259, 5255, 5257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41069	053)607-6281~5 6256	053)607-6250
경 인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6440	031)240-7281~6	031)240-7523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8	61489	062)230-4253~4 4354	062)230-4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4944	042)250-4253~4 4453, 4256	042)250-4127
강 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033)240-6260
충 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8663	043)270-1351~2	043)270-1370
전 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산3길 14	55033	063)281-3143 3253	063)281-3250
경 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51439	055)279-9254~6	055)279-9387
제 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3219	064)720-3255	064)720-3260
인 천 병 무 지 청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1~5	032)454-2250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31)870-0358
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	강원 강릉 을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병무민원 전화 서비스 : 1588-9090

병무민원 인터넷 서비스 : www.mma.go.kr

산업지원병역ilter 사이트 : <http://work.mma.go.kr>
(복무관리포털 및 구인구직 시스템)

